

		<b>보 도 자 료</b>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<b>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</b> 
		배포일시	2018. 1. 19.(금) 총 8매(본문6)	
<b>담당 부서</b>	규제개혁 법무담당관	담 당 자	• 과장 이기봉, 사무관 정나선, 주무관 이창수, 정미정 • ☎ (044) 201-3224, 4816, 4817, 3233	
	도시경제과	담 당 자	• 과장 이정희, 사무관 황세은, 주무관 이승학 • ☎ (044) 201-4845, 4878, 3738	
	첨단자동차 기술과	담 당 자	• 과장 이재평, 사무관 김진후, 주무관 이동우 • ☎ (044) 201-3847, 3848, 3849	
	첨단항공과	담 당 자	• 과장 정용식, 사무관 정재원, 주무관 원정윤 • ☎ (044) 201-4307, 4315, 4290	
<b>보 도 일 시</b>		2018년 1월 22일(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 22.(월) 11:30 이후 보도 가능		

## 규제 면제·유예로 스마트시티·자율주행차·드론 혁신성장 가속화 자율주행차 안전기준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적기에 도입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1월 22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「규제 혁신 토론회」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혁신성장 선도사업인 △스마트시티 △자율주행차 △드론에 대한 규제 혁신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였다.
  -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선도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규제를 혁신하는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개최되었다.
- 이날 토론회에서는 스마트도시, 자율주행차, 드론 등에서 다양한 신기술 실험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.

\* 규제 샌드박스: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

- 아울러 신기술·신산업의 도입과 발달에 따라 안전·보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, 안전을 담보할 있는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계속 해나가는 방안이 검토되었다.
- 특히, 신기술 안전에 대한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업계·시민단체 등 민간과도 충분한 의견 교환의 기회를 갖도록 할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는 혁신성장 선도사업인 △스마트시티 △자율주행차 △드론에 대한 규제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많은 사람들에게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.
- 토론회에서 발표한 국토교통부 소관 핵심 선도 산업에 대한 규제 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## 스마트시티 조성·확산

### ◆ 스마트 시티(Smart City)

- 도시에 ICT·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,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모델로,
  -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혁신기술을 도시 인프라와 결합해 구현하고, 융복합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의 "도시 플랫폼"으로도 활용

-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이 자유롭게 구현되는 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규제개선을 추진하고, 다양한 주체의 참여도 확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융복합 서비스를 창출하겠습니다.

□ 미래 신기술의 실험공간을 조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.

-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조성하는 “국가 시범도시”를 자율주행차, 드론 등 미래신산업이 자유롭게 구현되는 공간으로 계획해, 세계적인 스마트시티가 될 수 있도록 “규제 샌드박스\*”와 각종 특례\*\*를 도입합니다.

\* 사업시행자가 신청 → 관계기관 의견수렴/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검토 → 허용

\*\* 「도로교통법」, 「항공안전법」, 「소프트웨어진흥법」,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및 국공유지 특례 등

- 기술간 융복합이 가능한 도시공간으로 조성하되, 안전 등에 문제가 없도록 도시를 설계하겠습니다.

□ 기존 도시의 스마트한 공간활용을 촉진합니다.

- 종래의 도시계획에 구애받지 않고,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해 도시를 새롭게 바꿀수 있도록 입지규제 특례 등을 대폭 완화하는 “혁신성장 진흥구역”을 운영합니다.

- 획일적인 입지규제에서 벗어나, 기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창의적인 스마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.

□ 누구에게나 열린 스마트시티를 만들 계획입니다.

- 지자체가 공공목적의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자가망 연계 분야 확대, 민간 서비스 활용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.

\* 현행 법령에서는 교통, 환경, 방범, 방재의 경우만 자가망간 정보연계 가능 (이해관계자 의견수렴,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책방향 결정)

-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시범도시에는 기업이 규모에 관계없이 스마트시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제주체의 시장진입을 허용하겠습니다.

## 자율주행차 규제혁신

-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서비스,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려해도 개별 법령의 다양한 규제를 모두 검토해야 했으나, 이제는 마음껏 개발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됩니다.
  - 새롭게 조성되는 스마트시티 등에 모든 규제가 면제되는 자율주행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무인 자율주행 택시 등 혁신적인 미래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.
- 그동안 동일한 자율주행차도 임시운행허가 신청 시마다 일일이 안전성을 검증해야 했었지만, 기존 허가받은 자율주행차와 동일한 차량은 서류 확인만으로 시험운행을 허가합니다.
  - 허가에 필요한 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(2주 이상 → 1주 미만)하여 신속하게 실제 도로에서 시험운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.
- 하차 시 시동을 끄도록 하는 운전자 의무규정 등으로 인해 제한을 받던 원격 자동주차 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함께 제도를 개선합니다.
- 아직 자율주행차에 맞는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본격적인 제작에 제한이 있으며,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보험 제도로 인해 자율주행 중 발생한 사고 처리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.
  - 자율주행차가 만족해야 하는 제작·성능기준인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, 2020년에 자율주행차가 시중에서 판매(상용화)될 수 있도록 하고 국제기준도 선도하겠습니다.
  - 또한 자율주행 중 발생한 사고에 적합한 보험제도를 마련하여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가해자의 복잡한 책임문제를 명확히 하겠습니다.

□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스마트도로, 정밀도로지도 등 인프라에 관한 표준을 만들어 자율협력주행\*을 활성화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.

\* 안전성·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차가 스마트인프라로부터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 주행

○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표준에 반영하는 한편, 세계적으로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을 선도하겠습니다.

□ 이러한 규제혁신을 통해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달성하여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습니다.

○ 이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완전 자율주행차에 대한 대비, 미래 교통시스템 구축, 국민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변화를 위한 규제 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·개선해나갈 것입니다.

○ 이번 규제혁신으로 추진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기술개발이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, 다양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어 시범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---

## 드론산업 육성

---

□ 미래 무인항공시대를 선도하기 위하여 국내 드론산업을 키워가고, 선제적으로 관리체계를 정비하며, 미래형 드론 교통관리체계를 개발합니다.

□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드론산업이 활성화됩니다.

○ 민간에서 직접 상용화 테스트를 하기 어려운 분야\*를 선정하여 '규제 완화+재정 지원'을 통해 조기 상용화를 유도합니다.

- \* (例) ① 극한 기상환경용, ② 공공시설물, 문화재 등 지상인프라 정밀점검, ③ 군·경찰·소방용 등 특수 극한업무용, ④ 해양순찰(조난, 수색, 오염감시 등) 정밀점검 실증

- 샌드박스 구역 내에서 각종 규제나 인·허가를 일괄의제하는 등 규제부담이 대폭 완화된 자유로운 시험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.

□ 드론 분류기준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규제가 적용됩니다.

○ 기존 무게·용도 중심 드론 분류체계를 위험도·성능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규제가 차등 적용될 예정입니다.

- 완구류급 등 저성능 드론은 고도제한이나 제한구역 비행금지 등 필수사항 외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고,


- 고성능 드론은 안전성 인증, 조종자격 및 보험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편리하고 안전하게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

□ 한국형 드론 교통관리체계인 K-드론시스템을 개발해 미래 무인항공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.

○ K-드론시스템은 ICT·빅데이터·AI 등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기체·S/W·항행설정 등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.

- \* 모든 드론의 위험도·성능 및 비행경로 등을 이동통신망을 기반으로 실시간 통합하여 AI 기반 자동관제시스템이 경로분석·회피경로 설정 등을 지원

○ K-드론시스템은 '21년까지 개발완료하고 '22년부터 실증을 통해 활용영역을 확대·고도화함으로써 드론택배·무인항공택시 등의 활용이 예상되는 미래 무인항공시대에 핵심인프라로 활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황세은 사무관(☎ 044-201-4878, 스마트시티 관련), 첨단자동차기술과 김진후 사무관(☎ 044-201-3848, 자율주행차 관련), 첨단항공과 정재원 사무관(☎ 044-201-4315, 드론 관련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-	---

1 개념 및 기대효과

- (개념) 신사업·신기술 대상 제한된 환경에서 기존규제에도 불구하고 일정 조건하 규제를 일부 면제, 유예하여 테스트 허용

\* 샌드박스(sandbox) : 어린이 안전을 위해 모래상자 안에서 놀이토록 하는 데서 유래

- 혁신 사업자가 기존 규제 부담 없이, 한정된 소비자 지역 대상 테스트 가능 (①시범사업 + ②규제탄력적용)

◆ 규제샌드박스 입법 예시

- (요건) 신사업 활동의 △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△불명확하거나 △적합하지 않은 경우
- (시범사업) 안전성 검증 등을 위해 지역, 기간, 규모 등을 제한하여 시범사업 진행
- (승인절차) 사업시행자 신청→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특별위원회 승인
- (규제특례) 시범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 다른 법령상의 규제적용 배제 효력 인정

- (기대효과) 기존 규제와 충돌하거나 인증 기준 등 규제가 없어 시장 출시가 막힌 혁신 제품·서비스의 안정성 및 사업성 검증

2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샌드박스 관계

- (포괄적 네거티브) 신제품과 신서비스 출시를 먼저 허용하고, 필요시 규제하는 사후규제체계, 핵심 요소는 △입법방식\*과 △혁신제도\*\*

\* △포괄적 개념 △유연한 분류 체계 △성과중심 관리 △네거티브리스트(원칙허용·예외금지)

\*\* △시범사업·임시허가 △규제탄력적용 △특례 철회 등 사후규제 수단

- (규제샌드박스)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의 핵심요소,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 출시를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 혁신제도

<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념 >





### 3 규제샌드박스 사례

#### ① 해외 사례 : 영국 핀테크 산업

- 전략산업인 금융업 혁신을 위해 기존 금융업자 및 미인가 사업자 대상으로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,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의 시범사업 허용

\* 영국 금융 규제 당국(FCA)은 혁신적 금융 사업자의 신청을 심의하여 기존 규제 적용 유예 또는 규제면제 할 수 있는 법적 권한 보유(Financial Service Act)

- 혁신적 금융 사업자의 신청을 심의하여 기존 규제를 일정기간 일부 면제하거나 유예하여 일정 소비자군 대상 시범테스트 수행

구분	영국 금융 규제샌드박스
도입 시기	'15.11월
적용대상	기존 금융회사 및 미인가 기업
주요 수단	①개별지도 ②특례적용 ③비조치의견서 ④제한인가 ⑤지정대리인
소비자보호	① 테스트 실시 대상 소비자군을 사전에 한정 ② 소비자 피해에 대비한 보상체계 사전마련
사후조치	금융당국의 사후평가 후 정식인가 및 서비스 출시 허용여부 결정

#### ◆ 영국 규제샌드박스에 활용되는 주요 수단

- ① 개별지도 : 신규 금융서비스와 관련한 금융규제 적용기준 질의 시 개별 유권해석 제공
- ② 특례적용(waiver) : 특정 금융회사에 신규 금융서비스 관련 금융규제 적용 면제
- ③ 비조치의견서 : 신규 금융서비스가 감독당국의 제재 대상 아님을 명시적으로 회신
- ④ 제한인가 : 전체 인가요건 중 테스트 시행에 필요한 요건만 충족 시 한시인가
- ⑤ 지정대리인 : 인가 취득기업이 테스트를 원하는 미인가 기업에 영업 대리권한 부여

#### ② 국내 사례 : 드론 산업

-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일반 공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△비가시권 비행 △야간비행 △고고도비행(150m이상) 등을 7개 시범공역\*에서 예외적 허용

\* △강원 영월 △전남 고흥 △경남 고성 △충북 보은 △부산 영도 △대구 달성 △전북 전주

⇒ 비행 관련 규제를 일부 면제하여, 자유로운 성능테스트 허용

구분	관련 규정 (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)	시범공역의 경우
① 고도 제한	지표면·수면 상단 150m 내 비행 제한 (지방항공청장 허가를 받은 경우 예외 허용)	시범장소별 300m 또는 450m까지 고도비행 허용
② 비가시권비행	육안으로 확인 불가 비행 제한 (국토부장관 허가를 받은 경우 예외 허용)	비가시권 비행 예외 허용
③ 야간비행	일몰 후부터 일출 전 까지 야간비행 제한 (국토부장관 허가를 받은 경우 예외 허용)	야간비행 예외 허용

\* 현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시범 사업 진행 중('15.12월 ~)